

## 물질안전보건자료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KE-441K-T

####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RTV고무  
○ ○ 전기.전자.일반공업용코팅재,  
○ ○ 전기.전자.일반공업용접착설재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 다. 공급자정보

##### 제조사

회사명 신에츠화학공업주식회사  
담당부문 군마 사업소 품질 보증부  
주소 일본 군마현 안나가시 이소베2가 13-1(우379-0195)  
전화번호 + 81(0)27-385-2172  
FAX번호 + 81(0)27-385-2753

##### 공급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담당부문 업무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지티타워15층)  
전화번호 + 82(0)2-590-2500  
FAX번호 + 82(0)2-590-2501  
응급상황 + 82(0)2-590-2500  
이메일 msds@shinetsu.net

###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1  
피부 과민성 구분 1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성은 "분류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또는 "분류가 가능하지 않음"임.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 그림문자



○ 신호어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P261 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80 화학물질용 안전장갑·화학물질용 보호복·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십시오.

###### 대응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십시오.  
P333 + 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십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십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P321 증상에 따라 처치를 하십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 폐기

P50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 할 것.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이제품은 물, 수분, 습기와 반응하여 다음의 화합물을 생성함:  
 메틸 에틸 케톡심

보충정보

없음.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실리콘 (비해당 유해화학물질) 자료없음	관용명 및 이명 ;	영업비밀	영업비밀	80 ~ 90
무기 화합물 (비해당 유해화학물질) 자료없음	관용명 및 이명 ;	영업비밀	영업비밀	10 ~ 20
메틸 옥심 실란 케톡심) 실란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트리 (메틸 에틸	22984-54-9	KE-03880	1 ~ 3
비닐 옥심 실란 케톡심) 실란	관용명 및 이명 ; 비닐 트리 (메틸 에틸	2224-33-1	KE-03878	1 ~ 3
알콕시실란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919-30-2	KE-01583	0.3 ~ 1
유기 주석 지방산 염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영업비밀	영업비밀	0.1 ~ 0.3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108-88-3	KE-33936, 97-1-298	0.1 ~ 0.3
메틸 에틸 (불순물)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논 옥심	96-29-7	KE-03881	0.1 ~ 1
분해생성물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메틸 에틸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논 옥심	96-29-7	KE-03881	

###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낼 것. 용이하다면 콘택트 렌즈를 빼 것. 계속해서 씻어 낼 것.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작업복을 즉시 벗고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피부에 약간 접촉된 경우에는 다른 피부 부위에 물질이 묻지 않게 할 것.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에 문의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시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처치하시오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열을 받거나 화재 발생시, 유해한 증기/가스를 형성할 수 있음.  
 이산화질소 (부식성)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소방요원은 화염보호의, 헬멧, 보호장갑, 고무장화, SCBA를 포함한 표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시오.

예방조치

위험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누출된 물질을 만지거나 그 위로 지나가지 말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추가 누설 또는 누출을 방지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점화원을 제거할 것.

대량 누출: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팠 것.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을 것. 질석, 모래 또는 흙 등의 비가연성 물질로 제품을 흡수시킨 후, 후속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수거할 것.

소량 누출: 흡착제질(예. 천, 플리스(fleece))로 닦아낼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것.

절대로 얼질러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적절한 환기장치를 준비하십시오. 취급/보관 시에 주의하십시오. 노출된 화염,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할 것. 금연.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미스트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본 재료가 눈과의 접촉되는 것을 막을 것. 피부 접촉을 피할 것.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열, 스파크 및 노출된 불꽃으로부터 멀리할 것.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할 것.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한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함.

양립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 (본 MSDS의 10항을 참조).

원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것.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구성성분	종류	값
유기 주석 지방산 염	TWA	0.1 mg/m3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STEL - 단기노출기준	560 mg/m3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TWA	150 ppm 188 mg/m3 50 ppm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구성성분	종류	값
유기 주석 지방산 염	STEL - 단기노출기준	0.2 mg/m3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TWA	0.1 mg/m3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TWA	20 ppm

**재료 공급자 가이드 라인**

구성성분	종류	값
메틸 에틸 (불순물)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논 옥심 (CAS 96-29-7)	STEL - 단기노출기준	10 ppm
	TWA	3 ppm
<b>분해생성물</b>	<b>종류</b>	<b>값</b>
메틸 에틸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논 옥심 (CAS 96-29-7)	STEL - 단기노출기준	10 ppm
	TWA	3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ACGIH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	값	결정 요인	표본	샘플링 시간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0.3 mg/g	o-크레졸, 가수분해된	소변 내의 크레아티닌	*
	0.03 mg/l	톨루엔	소변	*

**ACGIH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	값	결정 요인	표본	샘플링 시간
	0.02 mg/l	톨루엔	혈액	*

\* - 건본의 자세한 내용은 출처자료를 참고할 것.

**노출 지침** 기타 성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OELs: 피부 호칭**

유기 주석 지방산 염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비밀) 물질을 말함(피부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

**US ACGIH 기준 한계 값: 피부 명시**

유기 주석 지방산 염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피부에 흡수될 수 있음.  
영업비밀)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방폭 처리된 전체 및 국소배기장치. 세안장치 시설을 제공할 것.  
국소배기장치같은 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용후 최소한 24시간 동안 문을 개방하십시오.

**다. 개인 보호구**

- o 호흡기 보호: 작업자들이 노출 한계 이상의 농도에서 일할 경우에는 허가된 호흡기를 사용해야 함.
- o 눈 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 할 것.
- o 손 보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 할 것.
- o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 할 것.

**위생대책**

눈에 닿게 하지 말 것. 피부 접촉을 피할 것.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우수한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형태: 페이스트  
색: 유백색, 반투명

**나. 냄새** 옥심 냄새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측정되지 않음 (수용성 참조)

**마. 녹는점/어는점**

녹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사. 인화점** > 70 °C (> 158 °F) 밀폐식 시험 방법  
180 °C (356 °F) 개방식

**아. 증발 속도** < 1 (부틸 아세테이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자료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무시할수있음(25°C)

**타. 용해도**

용해도(물): 불용성

**파. 증기밀도** > 1 (공기=1.0)

**하. 비중** 1.04 (25°C)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15 Pa·s (25°C)

**머. 분자량** 해당없음.

###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위험한 중합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물, 습기.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이제품은 물, 습기 또는 습한공기와 반응하여 다음 화합물을 생성함:  
 메틸에틸케톡심 『8. 폭로방지 및 보호조치』 및 『11. 유해성 정보』를 참조.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흡입으로 인한 악영향은 예상되지 않음.
- 피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눈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경구 섭취 위험이 낮다고 봄.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메틸 에틸 (불순물)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 논 옥심 (CAS 96-29-7)		
<b>급성</b>		
<b>경구</b>		
LD50	쥐	> 900 mg/kg (수컷 및 암컷) 2326 mg/kg (남성)
<b>경피</b>		
LD50	토끼	> 1000 mg/kg (수컷 및 암컷)
<b>흡입</b>		
증기		
LC50	쥐	> 4.83 mg/l, 4 시간 (수컷 및 암컷)
알콕시실란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919-30-2)		
<b>급성</b>		
<b>경구</b>		
LD50	쥐	1570 - 3650 mg/kg 1780 mg/kg
<b>경피</b>		
LD50	토끼	4290 mg/kg
유기 주석 지방산 염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b>급성</b>		
<b>경구</b>		
LD50	쥐	200 mg/kg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b>급성</b>		
<b>경구</b>		
LD50	쥐	5000 mg/kg 2.6 g/kg
<b>경피</b>		
LD50	토끼	12124 mg/kg 14.1 ml/kg
<b>흡입</b>		
LC50	쥐 (Mouse)	400 ppm, 24 시간

분해생성물	종	시험 결과
메틸 에틸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 논 옥심 (CAS 96-29-7)		
급성 경구 LD50	쥐	> 900 mg/kg (수컷 및 암컷) 2326 mg/kg (남성)
경피 LD50	토끼	> 1000 mg/kg (수컷 및 암컷)
흡입 증기 LC50	쥐	> 4.83 mg/l, 4 시간 (수컷 및 암컷)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토끼 : 5mg/24Hr 심함 [알콕시실란]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비닐옥심실란] [메틸에틸케톡심]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메틸옥심실란] 눈-토끼:0.75mg/24Hr심함 [알콕시실란]	
o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o 피부 과민성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메틸옥심실란] [비닐옥심실란] [알콕시실란] [메틸에틸케톡심]	
o 발암성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메틸에틸케톡심]	
IARC 단행본. 발암성에 관한 총평		
틀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3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o 생식세포 변이원성	음성(Ames 시험) [알콕시실란]	
o 생식 독성	자료없음.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다음 장기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조혈계.[비닐 옥심 실란] 조혈계.[메틸 옥심 실란]	
o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다. 기타 정보	추가정보 메틸 에틸 (MEKO).이 물질이 습한 공기중에 점차노출됨으로MEKO를 생성함.MEKO에 고농도에서 노출된 수컷 설치류는 일생동안 간암을 발생함.그러나 사람에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함.아래의MEKO에 대한 상세정보를 정독하십시오. 피부자극성;약한자극을 일으킴.피부를통해흡수될수있음. 눈자극성;심한자극을일으킴. 급성경구독성 ;LD50(rat)= >900mg/kg. 급성피부독성;LD50(rabbit)= >1000mg/kg. 급성흡입독성; LC50(rat) > 4.83mg/l/4Hr 흡입독성;고농도에서마취행동을 보이고 혈액효과를 생성할수있음. 피부민감성;양성(기니아 피그) 신경독성;고도 복용은 신경행동적 기능에 잠재적이고 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킬수있음. 발암성;쥐와 라트를 일생흡입연구(약2년) 시험에서 간암이 관찰되었음. 이외의 장기폭로시험:후각상피세포의 퇴화가 관찰되었다(쥐, 생쥐)(MEKO 15, 75, 375ppm). 또한, 404ppm의 농도에서 혈액학지표에 유의의 변동이 인정받았다. 작업장노출기준 판매자 지침; 3ppm(TWA), 10ppm(STEL), AIHA WEEL ; 10ppm(TWA) 다른 구성 요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메틸 에틸 (불순물)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 논 옥심 (CAS 96-29-7)		
수생 어류	LC50	팻헤드 미노우 (Pimephales promelas) 777 - 914 mg/l, 96 시간
알콕시실란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919-30-2)		
수생 어류	LC50	송사리 > 1000 mg/l, 48 시간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플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수생			
갑각류	EC50	물벼룩(학명 다프니아 마그나 )	5.46 - 9.83 mg/l, 48 시간
어류	LC50	코호 연어, 은연어 (Oncorhynchus kisutch)	5.5 mg/l, 96 시간

분해생성물	종		시험 결과
메틸 에틸 관용명 및 이명 ; 2-부타 논 옥심 (CAS 96-29-7)			
수생			
어류	LC50	팻헤드 미노우 (Pimephales promelas)	777 - 914 mg/l, 96 시간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대기중 또는 수분중에서 쉽게 가수분해함. [알콕시실란]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오존층 유해성		자료없음.	
바. 기타 유해 영향		다른 구성 요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비 고형화 물질:소각처리. 소각설비는 소각시 발생하는 실리카 또는 미분체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작업자는 호흡기 같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여야한다. 고형화 물질:매물 또는 소각. 소각설비는 소각시 발생하는 실리카 또는 미분체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작업자는 호흡기 같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여야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할 것. 관련 지방/지역/국가/국제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b>IATA</b>	
가. 유엔번호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위해 등급	해당없음.
부수적 위험	-
라. 용기등급	자료없음
마. 환경유해성	아니오.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해당없음.
<b>국제해상위험물 (IMDG)</b>	
가. 유엔번호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위해 등급	해당없음.
부수적 위험	-
라. 용기등급	자료없음
마. 환경유해성	
해양오염물질	아니오.
EmS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해당없음.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본제품은 포장없이 그대로 실어 수송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유기 주석 지방산 염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영업비밀)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 관찰물질 (폐지)

규제되지 않음.

#####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등급 III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유해물질

유기 주석 지방산 염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영업비밀)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톨루엔 관용명 및 이명 ; 메틸 벤젠 (CAS 108-88-3)

#### 추가 정보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목록현황

##### 국가 혹은 지역

한국

##### 목록명

한국 기준화학물질 목록 (ECL)

#####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대한민국.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19 호

### 나. 최초 작성일자

2012년 12월 26일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19년 5월 7일 (04 개정)

### 라. 기타

자료없음

### 책임의 한계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제조 된 제품입니다.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 테스트하여,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 하십시오.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개정 정보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사용상의 제한

유해성·위험성: 예방

유해성·위험성: 대응

유해성·위험성: 저장

유해성·위험성: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보충정보

성분의 구성 및 정보: 성분

물리 및 화학적 특성: 다중 특성

법적 규제현황: 법적 규제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그 밖의 참고사항: 추가 정보

GHS: 확정 분류 결과

#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1쪽)

제 공 자	상호(명칭)	한국신에츠실리콘(주)	사업자등록번호	104-81-20501
	성명(대표자)	FUKUDA MASAKI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김주옥(02-590-2524)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전화번호: 02-590-2500) GT타워 15층 (팩스번호: 02-590-2506)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Toluene		
	고유번호(CAS No. 등)	108-88-3	상품명	MSDS 참조 (불함)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영업비밀	용도	48. 용제(Solvents)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혼합물질의 경우 함량으로 유독물질 여부 적용)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술내용	
위 해 성 정 보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 산업적/전문적 용도: 48. 용제(Solvents) 점착방지제, 이형제, 박리제, 도료첨가제, 코팅제 등의 용매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 연간 예상 사용일수: 약 230 일/연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 일일 평균 사용량: 약 5,217 kg/일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 산업적/전문적 용도: (비분산적 사용)원료투입 후 건조 과정까지 비분산적 노출 발생 우려가 있으나, 활성탄 흡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수행이 되며 작업자는 적절 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노출을 최소화함.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산업적/전문적 사용 : (경피&흡입) 신고 물질은 원료투 입 후 코팅 및 건조시 경피와 흡입 경로로 노출이 발생 가능함. 따라서 작업자에게 적절한 안전 보호구(작업 복, 방독면, 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하게 하여 직접적 인 노출을 최소화 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대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활성탄 흡착시설을 사 용하여 대기 노출을 최소화 • 수계: 해당없음 • 토양: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폐기물 관리조치		•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체 전량위탁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작업자에 대한 무영향수준 흡입: 2.03mg/m3, 경피: 3.12mg/kg/day	